

팔도누림카 사업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경기도 장애인의 국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슬로프차량과 특장버스를 대여해 주어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팔도누림카’란 경기도 장애인의 국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의미한다.
 1. 6인승 슬로프차량: 휠체어1석, 일반5석(운전석1, 일반석4)으로 구성된 차량
 2. 27인승 특장버스: 휠체어6석, 일반21석(운전석, 보조석 제외)으로 구성된 차량
- ② ‘팔도누림카’ 사업운영 관련 대상은 공급자와 이용자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1. 공급자: 팔도누림카 차량을 소유한 주체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차량대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2. 이용자: 팔도누림카 차량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계기관 및 경기도 등록 장애인(동반인원)
- ③ ‘팔도누림카’ 이용(이동) 가능 지역은 국내 전국으로 하나, 도서산간지역*은 제외한다.
* 도서산간지역 : 육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육로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이용대상) 팔도누림카 차량의 이용자(이용대상)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경기도 내 등록 장애인 및 동반인원
- ② ‘장애인 이동 및 여행향유’를 목적으로 누림센터와 업무협약을 이행한 경기도 내 비영리·공공기관
- ③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 관계기관
- ④ 누림센터 및 입주기관 소속의 장애인(근로자, 이용자 등) 및 동반인원
- ⑤ 단, 보행상 어려움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경우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인원) 팔도누림카 차량의 최소 이용인원은 다음과 같다.

- ① ‘6인승 슬로프차량’의 최소 이용인원은 1대당 2명으로 정한다.
- ② ‘27인승 특장버스’의 최소 이용인원은 1대당 10명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등) 팔도누림카의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① ‘6인승 슬로프차량’의 이용기간은 1회 최대 3박 4일까지 가능하며, 이용일수는 연간 8일로 제한한다. 단, 설·추석 연휴 기간에 한하여 사전 협의를 통하여 최대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27인승 특장버스’의 이용기간은 1회 최대 2박 3일까지 가능하며, 이용일수는 연간 8일로 제한한다.
- ③ 팔도누림카는 상설(주중·주말) 운영하며 입·출고는 평일 09:00~18:00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6인승 슬로프차량’은 운전자의 신분확인, 이용대상의 준수사항 고지, 차량상태(연료량, 차량 손상부위, 점검사항 등) 확인 및 차량사용대차계약서 작성 후 운전원 교육 등의 절차에 따라 차량 입·출고를 진행한다.

제6조(이용지역 및 제공사항 등)

- ① 경기도 등록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 목적에 따라 국내 전국 이동이 가능하나 도서 산간지역*은 제외한다. 또한 제11조제1항의2에 따른 목적으로 이용은 제한된다.
- ② 특장버스 이용지역은 국내 전국 이동이 가능하나, 도착지(복귀 장소) 기준 18:00이전 도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거리 시 1박 이상 숙박의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다.
- ③ 팔도누림카 차량유형별 공급자 제공사항 및 이용자 부담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1. 슬로프 차량 이용자는 차량 사용 후 주유를 완충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미완충 상태로 반납할 경우 센터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유류비를 사후 청구한다.
 2. 슬로프차량 주유 완충 후 반납 시 별도의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주유 완충으로 출차가 안 되었을 경우 최초 출차 기준 측정 연료수준과 동일하게 주유 후 반납 시 별도 이용료 미청구
 3. 슬로프차량이용 시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직접 납부가 불가능할시 이용자에게 계좌이체로 추가 청구한다.

제7조(운행취소) 누림센터의 운영 방침 및 천재지변, 사고, 고장 등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 시 운행을 취소할 수 있다. 누림센터는 그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 및 취소)

- ① 이용신청은 누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제11조에 따른 이용대상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한다. 또한 홈페이지 신청절차가 완료된 이후 이용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에 해당되는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차량 예약 및 접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월별 세부 일정 및 운영상의 특이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센터의 안내에 따른다.
 1. 예약 개시일: 차량 예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달의 2달 전 매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2. 접수 및 우선순위 기준
 - 가. 우선접수: 매월 1일~7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휠체어 사용자(동반인 포함)를 대상으로 거주지별 다음 구분에 따라 차량을 우선 접수·승인한다.
 - 1) 1호차: 경기 남부 15개 시·군
거주자 (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시 제외)
 - 2) 2호차: 경기 북부 10개 시·군 및 경기 남부 6개 시·군(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시) 거주자※슬로프의 경우 남부 슬로프는 1호차, 북부 슬로프는 2호차로 구분한다.
 - 나. 일반접수(매월 8일~말일): 거주지 및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승인한다.
 3. 미운영일 등의 제한: 차량별 정기 미운영일(특장버스: 일·월요일 등) 및 센터 지정 공휴일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슬로프차량의 주말 및 공휴일 이용은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신청취소는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위반 시, 연간 이용일수에서 1일을 차감한다.
- ④ 이용신청은 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이용신청일로부터 이용일까지 일수가 6일 이하 시 운행이 불가 할 수 있다. 단, 사전 협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제9조(이용승인) 누리센터는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를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승인여부(승인 불가 시 사유 포함)를 통지한다. 단, 이용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 정산 후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운전자의 자격)

- ① 팔도누리카 6인승 슬로프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 27인승 특장버스는 계약된 운수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운전자를 배치하며 센터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한 사람
 2. 이용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만 21세 이상인 사람
 3. 관계 법령에 따라 차량 운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신청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1조(이용대상 준수사항)

- ①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상은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팔도누림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후에는 이용기간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기간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누림센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팔도누림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
 - 정치 및 종교활동의 목적을 가진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이용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 기타 대여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대상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이용대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팔도누림카 차량 이용자는 차량 신청시 '팔도누림카 차량 안전수칙 준수 동의'에 대해 확인하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 이용대상은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누림센터에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이용대상은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기관 이용이지만 의도적으로 개인 신청하여 이용할 시 연간 이용횟수에서 1일을 차감한다.

※ 개인으로 신청 후 기관에서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기관명으로 세금계산서 요청 시 기관 이용
으로 간주한다.

② 팔도누림카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팔도누림카의 운전자는 제10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이용대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한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 차량 손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나 재물 상의 손실(파손 및 훼손 등)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대상이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차량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는 향후 1년간 이용이 제한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누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차량 이용을 위하여 이용대상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누림센터는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이용대상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 정보를 경기도 각 시·군, 경찰청, 보험사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동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누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개인정보의 처리)에 따라, 팔도누림카 차량 운영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방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

팔도누림카 차량유형별 공급자 제공사항 및 이용자 부담사항

구분		슬로프차량	특장버스
차량정보	차량유형	휠체어 슬로프차량 2대 (센터 보유차량)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2대 (’26년 임차계약)
	유류종류	경유(남부), 휘발유(북부)	경유
	차량수량 (승인원)	휠체어석 1석, 운전석 1석, 일반석 4석 (6인승)	휠체어석 6석, 일반석 21석 (27인승)
	관리주체	누림센터, 북부누림센터	계약업체
	차고지	경기도 수원시, 양주시	경기도 내
	거주지역 운전가능 차량	1호차: 경기 남부 15개 (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시 제외) 2호차: 경기 북부10개, 남부 6개 시·군 (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시)	
누림센터 제공사항	운영방법	차량대여 서비스 (차고지 대여/반납)	버스배차 및 운전지원 서비스 (희망장소 승·하차 및 운전지원)
	신청방법	누림센터 홈페이지 차량예약 신청	
	신청기간	누림센터 홈페이지 사업안내 참고	
	운영기간	’26. 1.~’26. 12.	’26. 3.~’26. 12.
	운영기준	’26년 사업 운영기준 적용	’26년 사업 운영기준 적용
	자원내역	차량, 차량 보험 등	버스, 운전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이용자 부담사항	이용요금	이동거리 ÷ 연비(10km) × 주유단가 ※ 유류 완충 후 반납 시 이용료 미청구	이동거리 ÷ 연비(3km) × 주유단가
	부가비용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1박 2일 이상 이용시 운전기사 숙박/식사비
제출서류 * 이메일제출 (nurimcar@ggwf.or.kr)		① <제출서식 1-1> 팔도누림카 카네발 이용명단 ②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① <제출서식 1-2> 팔도누림카 특장버스 이용명단 ② <제출서식 2> 특장버스 운행 경로 일정표
		①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② 복사카드 사본 ③ 고유번호증(기관의 경우)	

- 주유단가 : 이용 시점 당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픈넷에 공시된 유종별(경유, 휘발유) 전국 평균 단가

- 슬로프차량 주유 완충 후 반납 시 별도의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주유 완충으로 출차가 안 되었을 경우 최초 출차 기준 측정 연료수준과 동일하게 주유 후 반납 시 별도 이용료 미청구

- 특장버스 1박 이상 이용하는 경우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개별 숙소와 석식과 조식에 한하여 제공한다.

별표 2

팔도누림카 이용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개인		기관(단체)	
	슬로프차량	특장버스	슬로프차량	특장버스
<제출서식 1-1> 팔도누림카 카니발 이용명단	○	-	○	-
<제출서식 1-2> 팔도누림카 특장버스 이용명단	-	○	-	○
<제출서식 2> 운행경로 일정표	-	○	-	○
장애인 등록 확인서류(대표 이용자 1인)*	○	○	-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	○	○
여행자보험 가입증서(모든 인원)*	○	○	○	○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사본(운전자)*	○	-	○	-

- 장애인등록확인서류: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확인 서류 대표 1인에 대해서만 제출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팔도누림카 사업 운영기준 제3조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팔도누림카 차량에 탑승하는 모든 인원의 가입이 확인되는 가입증서 제출
-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슬로프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서 제출

참고 1

신청우선 접수 기간 안내

○ 이용하고자 하는 달의 2달 전 매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함.

- 차량별 미운영일(특장버스: 일, 월요일 등)을 제외한 일정에 대한 차량신청이 가능함.
- 행사 등 기타사항으로 운영이 불가할 경우 미운영일이 추가 될 수 있으며, 슬로프차량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 협의 후 이용이 가능함.

<신청 예시>

예약개시일	예약 가능일	비고
3월 1일	5월 1일	예약 개시일 10시 예약 가능일자 하루씩 순차 오픈 (단, 미운영일의 경우 오픈되지 않음)
4월 1일	6월 1일	
5월 1일	7월 1일	
6월 1일	8월 1일	
7월 1일	9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 단, 6월과 8월, 7월과 9월과 같이 마지막 일수가 다른 경우는 아래 표를 참고한다.

예약개시일	예약가능일
6월 30일	8월 30, 31일
7월 30일	9월 30일
7월 31일	없음

○ 매월 1~7일(신청일 기준)은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동반인원' 과 '거주지별 구분에 따른 차량' 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며 우선 접수·승인처리 한다. (단, 우선 신청기간 이후 예약이 없는 경우 모든 장애유형 및 거주지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1호차: 15개 시·군(경기 남부 15, 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시 제외)
- 2호차: 16개 시·군(경기 북부 10, 경기 남부 6(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하남시))

○ 매월 8일~31일(신청일 기준)은 모든 장애유형 및 경기 남·북부 거주지 구분 없이 이용신청 가능함.

<예시>

3월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	2	3
2	3	4	5	6	7	8	4	5	6	7	8	9	10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6	17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23	24
23	24	25	26	27	28	29	25	26	27	28	29	30	31
30	31												

- 우선 접수·승인 기간: 1일~7일
- 모든 장애유형 및 경기 남·북부 거주지 구분 없이 신청 가능 기간

「팔도누림카」 카니발 이용명단

신청자	연락처	보조 연락처	신청 유형	신청 지역	이용기간		여행 지역	이용목적

휠체어 석 이용 시 휠체어(수동, 전동) 외 보조장치 탑승 금지
* 복지카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 번호 뒷자리를 미노출 처리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휠체어 석 이용 여부	비고 (휠체어 석 이용 시 전동, 수동내용 기재 부탁드립니다.)
1	홍길동	1431-03-15				
2	홍길서	1432-05-15				
3	홍길남	1433-02-15				
4	홍길북	1435-10-15				
5						
6						

※ 본 이용명단을 제출함으로써 「팔도누림카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였으며,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팔도누림카」 특장버스 이용명단

신청자	연락처	보조 연락처	신청 유형	신청 지역	이용기간		여행 지역	이용목적

휠체어 석 이용 시 휠체어(수동, 전동) 외 보조장치 탑승 금지
 * 복지카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 번호 뒷자리를 미노출 처리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휠체어 석 이용 여부	비고 (휠체어 석 이용 시 전동, 수동내용 기재 부탁드립니다.)
1	홍길동	1431-03-15				
2	홍길서	1432-05-15				
3	홍길남	1433-02-15				
4	홍길북	1435-10-15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본 이용명단을 제출함으로써 「팔도누림카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였으며,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팔도누림카 특장버스 운행 경로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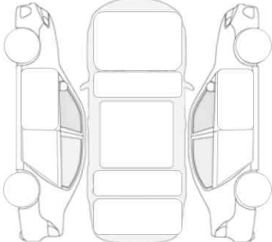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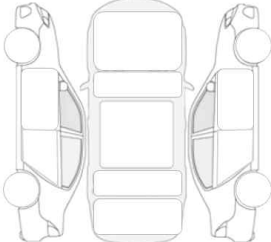
[illegible]

서식

팔도누림카 사용대차계약서 (6인승 슬로프차량)

차량번호	79거 5638	[점검사항]	
임차인		☐ 계기판상태 ☐ 워셔액, 와이퍼상태 ☐ 브레이크상태 ☐ 안내서 비치 ☐ 점멸등, 라이트상태 ☐ 냉·난방 작동상태 ☐ 타이어공기압상태 ☐ 청결상태	
생년월일			
연락처			

운전자명		제2운전자명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유효기간		면허유효기간	
연락처		연락처	

[출고]		[입고]	
대여일시	2026년 월 일 / :	반납일시	2026년 월 일 / :
대여장소	누림센터	반납장소	누림센터
현 주행거리	km	현 주행거리	km
연료량	☐ (E) ☐ 1/4 ☐ 1/2 ☐ 1/3 ☐ 3/4 ☐ (F)	연료량	☐ (E) ☐ 1/4 ☐ 1/2 ☐ 1/3 ☐ 3/4 ☐ (F) ☐ 이용자 주유비 부담(원)
손상부위	앞(전방)  뒤(후방)	손상부위	앞(전방)  뒤(후방)
특이사항		특이사항	
확인자	(서명)	확인자	(서명)